

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전통시장 화재공제과 지켜드리겠습니다

전통시장 상인의
필수품 **화재공제**



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는 공제로 가입금액 내 화재피해액 전부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

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문의

전통시장 화재공제 전용콜센터 1599-5460

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내용

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,
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

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
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

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주요특징

- 가입요건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
*건물구조급수 등급 단순화(4등급→2등급)
- 실손보상 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손해액 전액보상
공 제 료 순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



fma.semas.or.kr

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
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◎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 추가 혜택

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지원(소속시장)
장기계약 시 연간공제로 할인(2년 175%, 3년 250% 적용)

◎ 상품개요

가입대상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
가입기간 1년, 2년, 3년 중 선택가입(일시납)
가입한도 최대 6천만원(건물, 동산 각 3천만원)
상품구성 주계약(재고자산 및 건물), 특약(임차자/화재/음식물/시설소유·관리자 배상책임 및 화재벌금)

가입금액(예시)

주계약(재물손해)

구분	A급			B급		
	1년	2년	3년	1년	2년	3년
알뜰형 2천만원 (건물/동산 각 1천만원)	66,000원	115,400원	165,000원	101,500원	177,600원	253,700원
일반형 4천만원 (건물/동산 각 2천만원)	132,000원	231,000원	330,000원	203,000원	355,200원	507,500원
확장형 6천만원 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	198,000원	346,400원	495,000원	304,500원	532,800원	761,200원

*A급 대상 : 건축물대장(철근콘크리트 조/슬래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) 해당 점포

**A급 가입점포는 건물구조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송부(마침부 시 B급적용)

***임차자배상책임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% 할인 적용

특약(선택가입)

구분	지급사유	지급금액	추가 공제
화재배상책임 특약	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(폭발)에 따른 제3자의 신체, 재물 배상 책임	대인: 1인당 사망 1억원, 부상 2천만원 한도 대물: 1사고당 1억원한도	6,200원
임차자배상책임 특약	임차인(계약자)의 과실로 발생한 임차건물에 대한 배상 책임	—	가입시 건물 요율의 10% 할인 적용
음식물배상책임 특약	계약자가 가입 확인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	대인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: 1사고당 1천만원, 공제기간(1년 단위)중 5천만원 한도(자기부담금 30만원)	16,600원
화재벌금 특약	계약자가 형법 제170조(실화), 혹은 동법 제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)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	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 (형법 170조) 1.5천만원 / (형법 171조) 2천만원	100원
시설소유·관리자 배상책임 특약	계약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(화재, 폭발사고 제외)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	대인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: 1사고당 1억원, 공제기간(1년 단위) 중 1억원 한도(자기부담금 10만원)	26,600원

가입제외 점포

- ◆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(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수)
- ◆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
- ◆ 공제 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-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 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
- ◆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

◎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절차

